

大學의 學術情報 交流體制

李 斗 榮

(中央大 圖書館學科)

1. 序 論

大學은 學術의 중심으로서 知識과 技能을 전수하고, 學藝를 교수·연구하며, 知的·道徳的·應用的能力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대학은 最高의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學理의 深奧를 연구하여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명의 達成을 支援해 주는 것이 곧 대학 도서관이다. 대학 도서관은 그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학의 中樞的인 구성 부분으로서 動的이며 效果的인 情報서비스를 학생과 교원에게 제공하며 대학 발전에 寄與·貢獻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바드대학교의 G.L. Kittredge 교수는 비록 하바드대학의 건물들이 다 파괴된다 하더라도 Widener 도서관만 살아 남는다면 하바드대학은 그 面貌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대학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哲學者 Sir. Karl Popper가 제시한 3元論의 存在論에서와 같이 인간에 의해 창조된 모든 產物(artifact), 즉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기록되어 있는 文獻, 인간의 감정과 느낌이 담겨 있는 音樂이나 藝術作品들이 속해 있는 第3의 世界를 客觀的 知識(objective knowledge) 世界라 하여 제 1의 物質世界와 제 2의 精神世界와

구별하고 있다. 인간은 제 3의 세계에 속한 인간에 의한 artifact를 통해서만 이것을創造해 낸 主觀的 知識世界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는 지금까지의 인간 지식과 경험의 모든 기록과 작품을 보존하고, 또한 이 내용을 터득하고 전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을 가리켜 社會的創造物이라고 한다.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곳이다. 기존 지식체계를 터득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다시 출발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 先行연구에 대한 文獻調査와 더불어 그 내용이 완전히 터득될 때 비로소 獨創의이고 새로운 假定이 나오게 되며, 이 가정에 의해 理論이 나오고, 이러한 이론들이 오랜기간 동안 批判과 討論을 거쳐 合意(consensus)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知識體系가 形成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식이 成長되어 나가는 것이다. 만약 학문을 하는 자, 연구·開發에 몸담은 자가 도서관이 所藏하고 있는 기존 정보자료와 最新 정보자료를 도외시한다면 그들로부터 正直하고 價値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을 가리켜 대학의 心臟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이 죽어 있는 심장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 뛰고 있는 심장의役割을 다하고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하여 주로 知的 資源의 제공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여 資料의 이용 방법, 讀書指導, 人格의 形成에 공헌하기 위해 다음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 ① 資料의 選擇 및 范集: 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情報센터로서 그 대학의 教育計劃과 研究計劃을 지원하고 人格의 형성, 情緒의 합양, 美的 鑑賞力의 양성 등에 공헌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情報資料를 선택·수집한다.
- ② 자료의 組織 및 整理: 도서관 자료는 學生·敎職員 기타 이용자에게 용이하게 接近되고, 개개의 자료가 갖는 價值와 體系的·組織的으로 구성된 資料群이 하나의 總體로서 갖는 價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分類, 編目, 配列, 規則化 등의 整理作業을 수행한다.
- ③ 자료의 蓄積·保管: 대학 도서관은 자료를 개개의 價值로서만 아니라 組織化된 형태로 後世에 전할 수 있도록 자료를 蓄積·保管한다.
- ④ 자료의 運營: 자료는 대학이 목적으로 하는 教育計劃 및 研究計劃에 同調하여 效果的으로 활용되게끔 운영한다.
- ⑤ 情報서비스: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指導 및 학생·교직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 ⑥ 讀書指導: 학생의 독서에 관한 지도 및 平生에 걸친 독서 습관을 함양시킨다.
- ⑦ 圖書館 相互協力: 自館의 所藏資料로서는 要求情報を 해결할 수 없을 때 국내외의 다른 도서관과의 相互協力を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해결한다.
- ⑧ 教養을 위한 奉仕: 大學文化生活의 센터로서 人格의 형성, 情緒의 합양, 美的 鑑賞力의 양성에 유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교수, 학생들 가운데서 도서관을 效果的으로 이용할 줄 아는 이용자들과, 도서관을 전혀 外面하고 사는 이용자들과의 구분은 너무나 뚜렷하다. 도서관을 이용할 줄 안다는 것은 이용자에게 원하는 자료가 비록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도서관은 이를 要請資料를 識別하고 獲得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도서관을 전혀 外面하는 학생이나 교수들은 두 가지 部類로 구분된다. 하나는 연구를 근본적으로 계획하는 부류이고 또 하나는 도서관 자료를 전혀 不信하는 부류이다. 도서관 자료라면 대학 도서관이 物理的으로 실제 所藏하고 있는 각종 情報資料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不信이라면 도서관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不滿足을 의미한다. 즉 도서관 자료의 質的量的인 면에서의 不實이 그 原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어느 한 도서관이 아무리 그 規模가 最大라 할지라도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전부 소장할 수는 없다는 大前提를肯定的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 정보자료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크게 不足하다고 본다. 본고는 이러한 假定 아래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所藏藏書實態를 조사·분석하고 情報資料의 絶對不足現象을 보완할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을 不信하면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줄 아는 열성적인 고객으로 될 때 대학과 도서관은 情報化 시대라는 이 사회에서 서로가 共存共生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다.

2. 圖書館協同의 理論的 背景

1) 物理的 自足의 限界性

도서관은 情報資料의 원활한流通에 대한 社會의 責任을 갖고 있다. 비록 도서관은 公共도서관, 大學도서관, 専門도서관, 特殊도서관, 學校도서관 등, 그 館種에 따라 정보서비스의 對象이 다르고 도서관 목적도 각각 달리하고 있지만 原則的으로 한 도서관이 이용자의 정보자료에 대한 需要와 供給의 均衡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만 가장 바람직한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용자의 요구를 즉자적으로 足足시킬 수 있는 獨自的 自足(self-sufficiency)의 能力を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도서관들은 獨自的 自足을 物理的인 방편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다. 과거에는 出版되어 나오는 문현이나 기타 자료의 양이 많지 않았고, 이용자의 요구도 지금과 같이 복잡하고 多樣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되어 나오는 문현의 대부분을 購入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 1955년만 하더라도 그 해에 전 세계적으로 출판되어 나온 책의 種數는 269,000種이었고, 1983년에는 1955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772,000種의 책이 출판되어 나왔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量의 책을 매년 한 도서관이 전부 구입한다는 것은 財政的으로 不可能한 일이다. 때문에 도서관은 효과적인 物理的 自足을 성취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특적과 이용자의 요구를 基礎로 한 도서관 자료의 選擇을 도서관의 中要한 業務의 하나로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자료들에 대한 書誌的 接近이 不完全하기 때문에 도서관 자료의 선택도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모든 정보자료에 대한 索引이나 目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된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누락된 자료는 그 존재조차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쪽절한 자료가 선택 대상에서 除外되고 마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선택과 관련하여, 限定된 圖書購入豫算 범위 안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기 위하여는 主題背景을 가진 主題專門司書나 자료 선택 업무에 경험이 많은 司書에 의하여 선택 與否가 판단되어야 한다. 때문에 도서관으로서는 專門職人力을 誘致하는 문제와 이를 고용하기 위한 財政的 負擔을 감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과거의 도서관들이 추구하여 왔던 物理的 自足에의 노력은 도서관 空間과도 관련이 된다. 도서관은 계속 增加하는 도서관 장서의 양과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도서관 건물을 增築하거나 新築해야 하는 꾀치 못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물론 도서관 자료를 마이크로形態로

縮力시켜 보존하면 공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겠지만 이용자에게 주는 이용상의 불편과 마이크로化된 자료들에 대한 選好度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도서관의 物理的 自足의 한계는 결국 書誌的 自足의 방법으로補完할 수밖에 없다. 書誌的 自足이란 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만 局限하지 않고 要請主題에 관한 자료들의 書誌의 識別 및 所在를 국가적 또는 세계적으로 파악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獲得·提供하는 能力を 의미한다. 때문에 서지적 자료는 어느 한 도서관의 獨自의 능력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오로지 도서관 協同體制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각각의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들에 대한 서지사항을 한 곳의 정보센터에 入力시키고 각 도서관을 정보센터와 연결시키거나, 綜合目錄을 作成·配布함으로써 각 도서관의 제한된 장서에서 擴大된 장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협력체제의 구성을 구상해 볼 수 있다.

2) 圖書館協同

도서관 협동체제는 자체 도서관의 제한된 資源을 擴大시키고, 자체 도서관의 기능과 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의 相互協力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 협력체제는 상호협력을 통하여 도서관간의 共通的利益을 추구하기 위한 道具요 手段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目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①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자료나 도서관 봉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②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정보봉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보봉사를 보다 적은 費用으로 제공하거나, 같은 수준의 비용으로 보다 向上된 정보봉사를 제공하려는 것, 나아가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정보봉사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¹¹⁾

Barbara Marcuson은 圖書館協同을 “두 개

1) 이두영, “圖書館網의 構造와 效率性 測定에 관한 研究”(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p. 15.

이상의 도서관이 도서관의 운영이나 資源의 이용 또는 이용자를 위한 정보봉사를 促進시키고 增進시키며 向上시키기 위한 活動”이라 定義하고 있다.²⁾

각종 도서관 協同프로그램의 형태를 ① 綜合 目錄의 作成, ② 藏書開發을 위한 協同, ③ 자료의 共同利用을 위한 協同으로 Robert Grazier는 구분하고 있다.³⁾

Keyes Metcalf는 도서관 협동의 형태를 ① 자료의 共同保管을 위한 協同, ② 書誌的 統括을 위한 협동, ③ 收書의 협동, ④ 도서관 이용을 위한 협동으로 分類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도서관들은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료 구입과 자료 정리에 따른 부담을 분담하고, 정보봉사 활동과 도서관 직원의 專門性을 분담함으로써 도서관의 獨自的 自足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美國에서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共同編目, 온라인 정보서비스, 도서관相互貸借 등의 機能들이 成功的으로 수행되고 있다. 共同編目의 대표적인 事例로는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WLN (The Washington Library Network), RLIN (The 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Network)을 꼽을 수 있다.

한편 書誌情報検索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면서부터 이용자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현재 500여 개의 書誌데이터 베이스가 商品化되어 있으며 온라인 書誌데이터 베이스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 代表的인 會社로는 BRS (Bibliographic Retrieval Services), LIS (Lockheed Information Systems),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ew York Times Information Services, SDC (System Development Corporation) 등을 들 수 있다.

도서관相互貸借는 도서관 기능 가운데서 가장 오랜 傳統을 가진 도서관 봉사로서 미국의

ILLINET (The Illinois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 FAUL (Five Associated University Libraries), NYSILL (New York State Interlibrary Loan), NLM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등이 相互貸借를 위한 대표적 인 네트워크들이다. 최근에 이르러 圖書館相互貸借業務은 學術雜誌나 研究報告書의 複寫를 위한 요구가 대부분으로 특히 英國의 BLLD (The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와 美國의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日本의 JICST (The Japan Information Cen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우리나라의 產業研究院(KIET) 등이 정보자료의 복사 업무로 이용자에게 크게 寄與하고 있다.

3. 大學圖書館의 藏書에 관한 基準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관련 法令 가운데서 도서관이 確保해야 할 장서수에 관한 基準令은 1955년 4월에 공포된 大學設置基準令(대통령령 제 1063호)으로부터 시작하여 1983년 6월 25일 개정 大統領令 제11153호에 이르기까지 4번에 걸쳐 그 내용이 改正되었다. 현재 有效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장서수에 관한 大學設置基準令은 大學圖書館基準令(1983년 6월 25일 개정 대통령령 제11153호)으로 다음과 같다.

제12조(도서관)

3항 : 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000 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

4항 :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 학과는 15종 이상)의 전문 분야 정기간행물

1980년 문교부가 제시한 대학 도서관 運營改善方案에는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藏書確保基準令의 未備點으로 ① 장서 확보 最低基準만 설정되어 있고 新規 購入圖書의 基準이 별도로 없

- 2) Barbara Marcuson, "Library Networks: Progress and Problems", *The Information Age: its Developments, its Impact*, Edited by Donald P. Hammer (Scarescrow Press, 1976), pp. 34~59.
- 3) Robert Grazier, "Cooperation among Libraries of Different Types," *Library Trends*, v. 6. (January 1958), pp. 331~342.
- 4) Keyes D. Metcalf, *Cooperation among Maine Libraries: a Report for the Larger Libraries of Maine* (Cambridge, Mass; 1961), p. 7.

으며, ② 學術雜誌 基準種數가 過小하게 책정되어 있고, ③ 基本圖書(敎養·學習用), 專門圖書 등 分野別 구분 없이一律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그改善策을 <表 1>과 같이 제시하였다.

<表 1> 대학 정상화에 따른 대학 도서관 운영 개선방안

(문교부 대학교육국, 학무 : 1020-1782 : 1980. 12. 30)

大學別 基本圖書(敎養·學習用) 最低基準
40,000원 이상

専門圖書·學術雜誌 基準

구 분	전문도서 (학과당)	학술잡지 (학과당)
人 文	2,000원 이상	15종 이상
社 會	5,000원 이상	30종 이상
自 然	2,000원 이상	25종 이상
家政·體能	1,500원 이상	10종 이상
醫 齒 藥	2,000원 이상	50종 이상

年間 新規購入圖書數

學生 1인당 2권 이상

한편 韓國圖書館協會에서 제시한 대학 도서관 장서수의 기준은 <表 2>와 같다.

<表 2> 대학 도서관 기준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 1981)

단행본	정기간행물	연간 증가수
기본도서 : 50,000책	인문계(학과당) 20종 이상	1인당
전문도서 : 학과당 6,000책	사회계(학과당) 30종 이상 자연계(학과당) 30종 이상 각정계 15종 이상 예·체능계 15종 이상 의학계열 700종 이상 치·약학계열 50종 이상	2책이 상 상 상 상 상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일 경우 <表 2>의 기준에 20%를 추가하고 단행본 수는複本과 製本된 정기간행물을 제외한다. 專門대학 도서관의 자료 기준은 <表 2>의 기준의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최근에 國內外의 대학 도서관 장서 기준들을 分析·檢討하여 제시한 李炳穆의 基準案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

① 大學設置基準令에 포함시키기 위한 基準 : 대학 도서관은 학생 1인당 20冊 이상의 도서를 갖추어야 하고, 학생 10명당 1種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한국도서관협회의 大學圖書館基準에 포함시키기 위한 基準 : 대학 도서관은 학생 1인당 30冊 이상의 도서를 갖추어야 하고, 학생 10명당 2種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갖추어야 한다. 연간 증가시켜야 할 도서는 학생 1인당 2冊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준안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한 이유는 대학설치기준령이 대학의 설치에 필요한最低水準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반면 한국도서관협회의 대학도서관기준은 이와는 상관없이 專門職團體로서 바람직하다고 勸獎하는 기준이라 보기 때문에 최저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法의 인 效力を 갖고 있는 大學設置基準令의 도서관 장서에 관한 기준을 國內는 물론 日本의 國立大學圖書館改善要項(文部省 大學學術局, 國立大學圖書館改善研究委員會, 1953), 私立大學圖書館運營要項(日本私立大學協會, 1968); 中國의 大學圖書館基準(中國圖書館學會, 1979); 美國의 대학 도서관을 위한 기준(美國圖書館協會 大學 및 研究圖書館部令, 1975) 등과 비교하면,

① 장서수가 학생정원 1인당 30권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우리나라 문교부 개선안을 제외한 日本, 中國, 美國, 우리나라 도서관협회案과 비슷한 수준이다.

②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준은 國內外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문교부 개선안 기준의 54%, 도서관협회안의 35%, 日本 기준의 41%, 中國 기준의 77%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③ 연간 증가 책수로는 대학설치기준령만이 연간 학생정원 1인당 3冊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國내외의 다른 기준들은 연간 학생 1인당 2冊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5) 李炳穆, 大學圖書館基準의 理論과 實際(九美貿易出版部, 1985), pp. 131~132.

4. 大學圖書館의 藏書保有現況과 問題點

本章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圖書冊數, 定期刊行物 種數, 年間增加冊數를 大學別로 分析하고, 다시 大學設置基準令에 의한 大學別 法定藏書數를 산출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 ① 1986년 문교법전의 부록으로 출간된 회계 예규·대학학생정원(文教法典編纂會 雜音)에 수록된 대학(교)을 調査對象으로 하였고, 法定基準值를 산출하기 위한 대학(교)별 學科數, 卒業定員數도 여기에 수록된 統計에 의거하였다.
- ② 각 대학(교)의 保有藏書數, 雜誌種數, 年間增加冊數는 1984년에 나온 韓國圖書館協會의 한국 도서관 통계에 의거하였다(대학(교)별 도서관의 보유 장서와 법정 기준치에 관한統計는 〈附錄〉을 참조할 것).

보유 장서 가운데서 單行本의 保有數와 法定基準值의 對比를 보면 〈表 3〉과 같다.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설치 기준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법정 장서수에 未達되고 있는 대학이 82개 대학(교) 가운데 70개교로서 85%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法定基準值의 50%도 확보치 못하고 있는 대학이 28개교로서 전체의 34%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별 경기간행물 구독증수와 대학별 법정 기준 잡지종수를 계산해 보면 〈表 4〉와 같다. 각

대학(교)이 구독하고 있는 雜誌種數를 法定藏書數와 비교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는 대학이 37개교로 45%에 달하고 있으며 法定基準值의 50%도 확보치 못하고 있는 대학이 11개교로 13%에 달하고 있다.

각 대학(교) 도서관이 연간 입수한 장서수와 연간 입수 기준치를 비교하면 〈表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2개 대학(교) 가운데 기준치 미달이 65개교로서 79%에 달하고 법정 입수 장서수의 50%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18개교로서 22%에 해당되고 있다.

1) 藏書의 不足現象

이상 우리나라 82개 대학(교) 도서관의 장서 보유 현황을 볼 때 우리나라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법정 최저 장서수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대학이 단행본으로는 전체의 85%, 정기간행물로는 45%, 연간 입수되어야 할 법정 장서수에 미달되고 있는 대학은 79%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가 이처럼 빈약한 학술 정보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데에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 더군다나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의 50%도 확보 못하고 있는 대학이 단행본으로는 전체의 34%, 정기간행물로는 13%, 연간 증가 책수로는 22%에 달하고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表 3〉 圖書 확보율

법정기준치에 따른 확보율 (%)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대학(교)수	1	2	3	11	11	10	9	10	6	7	12

〈表 4〉 정기간행물 확보율

법정기준치에 따른 확보율 (%)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대학(교)수	2	—	1	4	4	3	8	4	3	8	45

〈表 5〉 연간 증가 장서 확보율

법정기준치에 따른 확보율 (%)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대학(교)수	—	3	3	4	8	7	16	8	6	10	16

좀더 범위를 넓혀서 專門大學까지 포함해 보면 장서의 부족현상은 더욱 赤裸裸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4년 한국도서관통계(韓國圖書館協會)의 대학 도서관 현황에 의하면 전문대학과 각종 학교 124개관 가운데 기본 장서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무려 111개관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조금 각도를 달리하여 우리나라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필요로 하는 장서의 보유수와 대학생 1인당 돌아가는 책수를 보면 대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책수가 15.2책,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9.6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日本의 경우 대학생 1인당 장서 책수는 1983년 통계로 66.8책으로⁷⁾ 이것은 일본 대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생보다 4.4배의 책을 더 할당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藏書의 重複購入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收書政策은 예외 없이 物理的인 自足을 원칙으로 하여 왔다. 즉 限定된 예산범위 안에서 일차적으로 대학교육의 목적과 학생과 교수의 學習과 研究에 필요한 기본 장서와 기본 학술잡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 정보자료의 범위가 基本藏書, 基本雜誌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각 대학들은 같은 자료들을 重複入收하고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 커다란 損失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대학에서의 학습과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최신 정보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더욱 그려하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국내 학술잡지보다는 외국 학술잡지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외국 학술잡지를 중복 구입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 개발 활동을 沮害하는 커다란要因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간행된 몇몇 주요 학술잡지를 대상으로 하여 複本分布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⁸⁾ 다음과 같다.

- ① 1972년판 「外國科學技術雜誌綜合目錄」에 수록된 119개의 주요 연구기관, 산업기관, 대학 도서관 및 정보기관이 購讀 또는 所藏하고 있는 과학기술잡지 가운데 41.1%(2,079種)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중복 수집되고 있다.
- ② 同一 地域內(서울) 연구기관 및 산업기관 소장 複本分布率은 37.9%(1,916種)이다.
- ③ 西江大, 延世大, 梨花女大에서 1972년에 발간한 「축차간행물종합목록」의 복본분포율은 27.7%로 나타나 있다.
- ④ 「國立大學校所藏 逐次刊行物綜合目錄 歐美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의하면 同一機關이 경영하는 도서관간의 重複資料 분포 현황은 26.3%(330種)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국적인 정보자료의 重複蒐集 현상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는 없으나 1982년 대구지역의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호성여대 도서관의 외국 학술잡지 구독 실태와 중복 구입 실태가 김정소 교수의 지도 아래 조사된 적이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5개 대학교에서의 購讀種數는 1,861종으로 이 가운데 重複되고 있는 잡지 종수는 832종으로 45%에 해당되고 있다.¹⁰⁾

이러한 현상은 그로간(D.J. Grog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학 도서관이나 특수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한 도서나 연속간행물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도 이를 도서관에 분명히 많은 복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정한 편찰자라면 부인할 수 없다”¹¹⁾라는 우리나라의 복본 수집 현상에 대한 우려를 뒷

6)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한국 도서관 기준에 따르면 전문대학과 각종 학교는 대학(교)의 기본 장서수 50,000책의 50% 이상을 기본 장서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7) 韓國出版年鑑, 1985, 大韓出版協會, p. 129.

8) 日本統計年鑑, 1985, 日本 總務廳統計局編, p. 682.

9) 최성진, “한국 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의 모형연구,” 成大論文集 23집 (1976).

10) 김정소(지도교수), “대학 도서관 상호 협력에 대한 고찰 : 외국 학술잡지를 중심으로”, 계정도서관학보(1982. 12), pp. 9~27.

11) D.J. Grogan, 韓國을 위한 科學情報網(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974), p. 24.

믿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 도서관의 '84년도 자료구입비 종예산을 보면 17,019,988,000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서 4,700,534,000원이 잡지 구입비로 책정되어 있다. 이 예산이 각 대학 도서관의 기본 장서나 기본 학술잡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 같은 자료를 구입하는 데 쓰여졌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장서의 절대 부족으로 여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자료가 具備되어 있어야 하겠고 더욱기 法定藏書數도 確保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우선적으로 기본 장서부터 갖추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간의 共同收書政策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각 대학에 有益할 뿐만 아니라 共同收書의 개념을 성공적으로 定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자료가 重複購入되는 경우 있는 자료는 다른 대학에도 있고, 없는 자료는 다른 대학에도 없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하루 빨리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적절하고 가치 있는 정보자료를 서로가 활용할 수 있는 공동수서의 협동체제가 필요하다. 즉 각 대학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장서 내용을 특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각 대학은 할당된 주제 분야의 자료 구입에 一定額 이상의 구입비 지출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대학간의 자료의 중복 구입을 방지할 수 있고, 할당된 주제 분야에 관한 보다 깊이 있고 세분된 전공 도서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끼리 이들 자료를 자유롭게 共同利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로 收書의 協同이 처음 시도된 것은 1948년 英國 倫敦市內 28개 공공도서관들이 뉴이분류에 따라 55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주제 분야를 분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美國에서는 1948년부터 1972년까지 Farmington Plan을 세워 60개 전문도서관이 주제 분야를 할당하여 해당 분야의 外國出版文獻을 한 권 이상씩 구입해 한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美國議會

圖書館을 중심으로한 30개 전문도서관이 할당된 하나 또는 몇 개 국가의 출판문현을 수집하고 있다. 戰後의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4개국에서도 이와 같은 全國的 規模의 共同收書政策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3) 綜合目錄의 作成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근본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확보하고 있는 장서마저도 대부분이 重複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로 학생이나 교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서나 잡지의 種數로 본다면 더욱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자료들은 우리나라 전국 각처에 散在하고 있는 각종 도서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有用한 자료들의 내용을 識別할 수 있고 그 所在를 파악할 수 있는道具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 자료들은 각각 自館의 이용자에 의해서만 이용될 뿐 전국적인 이용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많지 않은 정보자료마저도 그 내용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활용될 수 없다면 이 또한 국가적인 損失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한 도서관의 제한된 정보자료로부터 보다 광범위한 정보자료로의 확장을 위한 書誌的 接近方法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자기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을 찾아낼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만 도서관간의 상호 대출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도구로서 둘 이상의 도서관을 포함한 도서나 잡지의 종합목록, 개별 도서관의 所藏藏書目錄, 또는 각종 索引 등의 二次資料들이 작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나오고 있는 도서의 綜合目錄類로는 국내 91개 주요 도서관이 매년 입수하고 있는 외국 도서를 수록하고 있는 「外國圖書綜合目錄」(국립중앙도서관, 1983), 국내 50개 不穩資料取扱機關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및 잡지를 수록한 「共產關係圖書目錄」(국토통일원, 1982), 과학단지내 14개 도서관의 서양 도서를 수록한 「科學圖地藏書綜合目錄」(연구개발단지 도서관협의회, 1971), 국내 7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농업 관계 서양 도서를 수록한

「食糧·農業關係圖書綜合目錄」(FAO 한국협회, 1976) 등이 나오고 있다.

잡지의 종합목록으로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189개 도서관의 잡지를 수록한 「科學技術雜誌綜合目錄」(산업연구원, 1983), 한국학술진흥재단의 「外國學術雜誌綜合目錄 自然·應用科學編, 1983」이 75개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고, 「人文·社會科學編, 1985」이 종합대학 44개, 단과·교육대학 47개, 특수도서관 11개관을 포함하고 있다. 6개의 국립 대학이 포함된 「國立大學校所藏 逐次刊行物綜合目錄 歐美編」(서울대학교 도서관, 1975), 「國立大學校所藏 逐次刊行物綜合目錄 韓國·中國·日本編」(서울대학교 도서관, 1977), 18개 사립대를 포함한 「外國學術雜誌綜合目錄」(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1979), 한국의 학도서관협의회에서 75개 회원 도서관을 포함한 「醫學關係雜誌綜合目錄」을 발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각종 綜合目錄은 수록 도서관의 범위가 全國的이어야 하며 綜合目錄의 刊期를 짧게 하여 최신 정보가 신속히 수록되어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종합목록 외에도 主題分野別 綜合目錄이 작성되어야 하며 特殊主題分野 도서관의 個別目錄도 작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전국에 걸친 대학 도서관의 자료에 대한 綜合目錄뿐만 아니라 研究所, 政府機關, 企業體 등을 포함한 主題別 綜合目錄이나 特殊主題分野의 個別 도서관목록도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에 절대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한편 각 대학은 在職教授論著目錄, 碩·博士學位論文目錄, 大學論文集目錄, 大學附設研究所의 出版物目錄, 기타 大學出版物目錄 등을 定期的으로 刊行하여 전국 대학(교)에 배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目錄類는 最新性을 유지하는 것이 그 生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電算化에 의한 目錄生產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각 도서관은 이와 같은 각종 目錄類를 통해서만 보다 확장된 장서에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보다 向上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체 利益을 위해서라도 協力體制에 대한 체계적인 차세에서 벗어나 目錄類作成作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5. 結 論

대학은 學術의 중심으로서 知識과 技能을 전수하고, 學藝를 교수·연구하며, 知的·道徳的·應用的能力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學理의 深奧를 연구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인 것이다. 때문에 대학은 대학의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도서관의 動的이며 效果的인 情報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을 가리켜 대학의 心臟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대학 도서관이 대학의 심장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知的資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本稿는 먼저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대학의 사명을 적극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情報資料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82개 대학(교)을 대상으로 대학별 藏書保有 現況과 우리나라 大學設置基準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法定藏書數를 대학별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圖書의 경우 法定藏書數에 未達되고 있는 대학이 70개교로서 85%에 달하고 있고, 法定基準值의 50%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대학이 28개교로서 3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② 定期刊行物의 경우 대학이 구독하고 있는 雜誌種數가 法定基準值에 미달되고 있는 대학이 37개교로 45%에 달하고 있으며 法定基準值의 50%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대학이 11개교로서 13%에 달하고 있다.
- ③ 대학 도서관이 年間 입수하고 있는 장서수가 法定基準值에 미달되고 있는 대학이 65개교로서 79%에 달하고 있고, 매년 法定基準值의 50%도 입수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18개교로서 22%에 해당되고 있다.
- ④ 專門大學의 경우 124개 도서관 가운데 基本藏書 5만 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111개교로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⑤ 우리나라 대학생 1人當 冊數는 대학(교)의 경우 15.2책, 전문대학의 경우 9.6책으로, 日本 대학생의 1인당 책수인 66.8책에 비해 너무나 貧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절대 필요한 情報資料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高等教育의 虛點을 그대로 보여 주는 일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대학이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基本藏書를 優先的으로 확보하는 收書政策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藏書의 대부분이 重複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확보하고 있는 장서의 數가 절대적으로 不足한 현실에서 이들 資料마저도 대부분이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 커다란 損失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대학에서의 學習과 研究活動을 支援하기에 필요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次元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세째로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値值 있는 情報資料들은 전국적으로 각 도서관이나 정보자료실에 散在해 있기 때문에 그 內容과 所在를 파악할 수 있는 道具가 마련되지 않는 한 自館의 이용자를 제외한 全國的인 活用과 交流가 이루어지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하나의 도서관이 獨自的인 能力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전부 충족시킬 수는 없다. 때문에 다른 도서관과의 書誌的 接近과 情報資

料의 交流를 가능하도록 하는 圖書館協同體制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학과 대학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情報資料들의 內容과 所在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情報資源을 全國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이다. 대학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전분야에 걸친 각종 情報資源을 모두 필요로 하고 있다. 때문에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研究機關, 政府機關, 企業體, 專門圖書館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자료들의 內容과 所在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綜合目錄, 主題分野別 綜合目錄, 特殊主題를 다루고 있는 個別圖書館所藏目錄, 所藏資料에 대한 索引·抄錄誌가 경기적으로 진행되어 全國 도서관에 배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情報資料의 내용과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道具가 마련될 때 도서관과 도서관 사이의 資料의 交流가 圖書館相互貸借體制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서로의 協力精神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相互協力を 통해 이루어지는 이 과업이 國家的으로나 個人的으로도 얼마나 重要하고 時急한 일인가를 우리나라 政府와 國聯團體와 個人이 함께 깨닫게 될 때 이 과업은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

〈附錄〉 대학(교) 도서관 보유 장서수와 법정 기준치

() 안의 수 : 법정기준치

대 학 (교) 명	학과수	총업정원	보 장 서 수	장 서 환보율 (%)	보유 접지증수	장 지 확보율 (%)	연 증가책수	증 가책 확보율 (%)
강 원 대 학 교	66	10,880	102,615 (326,400)	31	571 (825)	69	20,125 (32,640)	61
경 북 대 학 교	80	17,780	268,824 (533,400)	50	3,233 (980)	330	14,564 (53,340)	27
경 상 대 학 교	59	10,080	85,524 (302,400)	28	551 (755)	73	16,473 (30,240)	54
부 산 대 학 교	78	17,780	319,396 (533,400)	60	1,207 (980)	132	22,823 (53,340)	43
서 울 대 학 교	107	20,225	1,166,200 (606,750)	192	5,914 (1,345)	440	33,788 (60,675)	56
전 남 대 학 교	92	17,780	194,257 (533,400)	36	1,262 (1,170)	108	21,775 (53,340)	41
전 북 대 학 교	72	14,820	187,508 (444,600)	42	604 (1,617)	37	19,057 (44,460)	43
제 주 대 학 교	45	6,060	84,067 (181,800)	46	353 (540)	65	11,745 (18,180)	65

대학(교)명	학과수	졸업정원	보장유수	장서 확보율 (%)	보유 잡지총수	잡지 확보율 (%)	연간 증가액수	증가액 확보율 (%)
충남 대학교	69	11,732	169,594 (351,960)	48	1,028 (935)	110	27,985 (35,196)	80
충북 대학교	59	10,860	119,964 (325,800)	37	3,322 (745)	446	19,893 (32,580)	61
강릉 대학	16	2,360	26,150 (70,800)	37	168 (190)	88	4,724 (7,080)	67
공주 사범대학	25	3,045	63,925 (91,350)	70	172 (250)	69	9,283 (9,135)	102
군산 대학	19	2,760	37,423 (82,800)	45	80 (230)	35	6,102 (8,280)	74
목포 대학	26	4,160	40,941 (124,800)	33	270 (305)	89	5,185 (12,480)	42
부산 수산대학	24	4,000	52,353 (120,000)	44	752 (345)	217	6,100 (12,000)	51
순천 대학	22	2,670	11,484 (80,100)	14	122 (290)	42	1,478 (8,010)	18
안동 대학	21	2,560	37,830 (76,800)	49	100 (235)	43	4,700 (7,680)	61
창원 대학	21	3,020	7,431 (90,600)	8	72 (245)	29	1,400 (9,060)	15
한국 해양대학	10	3,940	39,407 (118,200)	33	125 (135)	93	3,000 (11,820)	25
서울 시립대학	22	3,400	74,100 (102,000)	73	330 (265)	124	10,000 (10,200)	98
전국 대학교	75	13,860	317,137 (415,800)	76	754 (945)	80	19,266 (41,580)	46
경기 대학교	39	7,760	201,500 (232,800)	87	590 (435)	135	27,000 (232,800)	12
경남 대학교	50	11,380	159,827 (341,400)	47	352 (605)	58	31,986 (34,140)	94
경희 대학교	78	15,100	542,071 (453,000)	119	956 (985)	97	13,624 (45,300)	30
계명 대학교	64	13,180	256,945 (395,400)	65	970 (745)	130	16,705 (39,540)	42
고려 대학교	69	17,720	634,346 (531,600)	119	4,905 (850)	577	48,000 (53,160)	90
국민 대학교	29	6,120	152,706 (183,600)	83	324 (315)	102	7,815 (18,360)	43
단국 대학교	70	14,580	169,493 (437,400)	39	2,477 (850)	291	12,102 (43,740)	28
대구 대학교	56	11,880	215,600 (356,400)	60	671 (665)	101	16,770 (35,640)	47
동국 대학교	70	13,780	334,474 (413,400)	81	2,918 (790)	370	40,102 (41,340)	97
동아 대학교	60	15,980	270,033 (479,400)	56	2,658 (745)	356	17,586 (47,940)	37
동의 대학교	38	6,420	107,520 (192,600)	56	280 (475)	59	18,000 (19,260)	93
명지 대학교	37	6,860	146,345 (205,800)	71	248 (475)	52	13,864 (20,580)	67
부산 산업대학교	42	7,100	139,000 (213,000)	65	171 (495)	35	11,500 (21,300)	54
서강 대학교	19	5,440	163,258 (163,200)	100	1,274 (225)	566	13,000 (16,320)	80
성균관대학교	53	13,160	363,960 (394,800)	92	860 (650)	132	30,000 (39,480)	76

대학(교)명	학과수	총업정원	보장서유수	장서화보율 (%)	보유지총수	장지화보율 (%)	연간증가액수	증가적화보율 (%)
성신여자대학교	35	4,680	120,042 (140,400)	86	365 (390)	94	16,766 (14,040)	119
숙명여자대학교	39	5,280	224,926 (158,400)	142	318 (435)	73	15,560 (15,840)	98
숭건대학교	26	5,920	125,933 (177,600)	71	885 (320)	276	15,000 (17,760)	85
아주대학교	20	4,900	63,891 (147,000)	43	410 (265)	154	9,700 (14,700)	66
연세대학교	65	17,860	589,544 (535,800)	110	2,379 (820)	290	33,055 (53,580)	62
영남대학교	67	18,080	368,949 (542,400)	68	1,779 (840)	211	18,887 (54,240)	35
울산대학교	31	6,840	64,072 (205,200)	31	544 (405)	134	12,067 (20,520)	59
원광대학교	66	13,780	217,556 (413,400)	53	1,043 (785)	132	35,000 (41,340)	85
이화여자대학교	54	13,920	400,135 (417,600)	96	3,607 (605)	596	23,783 (41,760)	57
인하대학교	50	13,780	241,304 (413,400)	58	968 (635)	152	46,315 (41,340)	112
전주대학교	26	5,980	78,498 (179,400)	44	175 (280)	63		
조선대학교	64	16,800	505,345 (504,000)	100	960 (795)	120	50,456 (50,400)	100
충양대학교	74	15,440	344,388 (463,200)	74	2,500 (860)	290	23,427 (46,320)	51
청주대학교	48	8,360	115,958 (250,800)	46	325 (530)	61	8,628 (25,080)	34
한국의국어대학교	54	11,100	245,377 (333,000)	74	1,055 (560)	188	26,000 (33,300)	78
한남대학교	33	7,020	84,294 (210,600)	40	348 (370)	94	16,075 (21,060)	76
한양대학교	91	19,780	417,953 (593,400)	70	1,287 (1,120)	114	43,209 (59,340)	73
홍익대학교	26	7,160	189,791 (214,800)	88	1,870 (310)	603	25,093 (21,480)	116
효성여자대학교	51	7,210	171,870 (216,300)	79	415 (565)	73	17,164 (21,630)	79
가톨릭대학교	4	1,160	38,555 (34,800)	111	704 (55)	128	2,197 (3,480)	63
감리교신학대학교	4	960	27,853 (28,800)	97	295 (40)	737	3,175 (2,880)	110
경원대학교	23	3,440	94,839 (103,200)	92	268 (275)	97	16,000 (10,320)	155
고신대학교	6	1,720	31,791 (51,600)	62	100 (75)	133	3,500 (5,160)	68
관동대학교	25	4,640	70,687 (139,200)	51	255 (275)	93	12,791 (13,920)	92
광운대학교	11	3,400	59,912 (102,000)	59	454 (145)	313	6,170 (10,200)	60
국제대학교	10	1,360	53,280 (40,800)	131	127 (110)	115	3,800 (4,080)	93
대전대학교	16	2,300	35,000 (69,000)	51	83 (210)	40	7,300 (6,900)	106
덕성여자대학교	22	4,000	127,869 (120,000)	107	242 (250)	97	11,217 (12,000)	93

대 학 (교) 명	학과수	졸업정원	보 장 유 수	장 서 확 보율 (%)	보 잡지총수	잡 지 확 보율 (%)	연 증가액수	증가액 확 보율 (%)
동 럭 여 자 대 학	24	2,840	63,000 (85,200)	74	250 (265)	94	9,000 (8,520)	106
배 계 대 학	15	2,100	41,567 (63,000)	66	110 (180)	61	8,397 (6,300)	133
부 산 여 자 대 학	25	3,660	100,257 (109,800)	91	406 (270)	150	11,133 (10,980)	101
상 명 여 자 대 학	30	3,840	97,908 (115,200)	85	540 (310)	174	12,317 (11,520)	107
상 지 대 학	24	3,580	29,192 (107,400)	27	11 (288)	3	7,100 (10,740)	66
서 울 여 자 대 학	22	2,600	75,210 (78,000)	96	2,867 (250)	1,146	7,539 (7,800)	97
성 심 여 자 대 학	17	3,100	88,229 (93,000)	95	283 (205)	138	7,901 (9,300)	85
세 종 대 학	22	3,960	157,590 (118,800)	133	486 (245)	198	16,000 (11,880)	190
수 원 대 학	27	3,400	22,573 (102,000)	22	14 (340)	4	22,500 (10,200)	221
순 천 향 대 학	15	2,800	55,123 (84,000)	66	144 (195)	74	19,627 (8,400)	234
인 천 대 학	29	4,920	27,000 (147,600)	18	163 (360)	45	9,026 (14,760)	61
전 주 우 석 대 학	26	3,820	40,340 (114,600)	35	203 (315)	64	7,024 (11,460)	61
청 주 사 범 대 학	17	3,240	46,343 (97,200)	48	245 (170)	144	6,832 (9,720)	70
한 림 대 학	17	1,940	19,400 (58,200)	33	555 (215)	258	3,500 (5,820)	60
한 성 대 학	11	2,080	36,065 (62,400)	58	119 (110)	108	8,400 (6,240)	135
한 신 대 학	12	1,800	35,415 (54,000)	65	135 (120)	113	4,169 (5,400)	77
호 남 대 학	15	2,920	46,541 (87,600)	53	193 (170)	114	6,000 (8,760)	68
호 서 대 학	15	5,380	48,164 (161,400)	30	117 (175)	69	13,500 (16,140)	84